



서울특별시 SH공사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제2015-8차 사규심의위원회 개최

사규관리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각 팀에서 의뢰한 사규 개정(안)에 대하여 「2015년 제8차 사규심의위원회」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.

1. 일 시 : 2015.12.23(금) 15:00

2. 장 소 : 14층 소회의실

3. 참석대상

가. 심의위원(9명)

- 위 원 장 : 기획경영본부장

- 위 원 : 경영지원처장, 경영혁신팀장, 전략정보팀장, 사업기획팀장,

마곡전략팀장, 택지조성팀장, 분양팀장, 법무팀장

나. 입안부서 관계자(아래 입안부서 참조)

4. 심의안건

연번	개정사규	개정요지	입안부서
1	경영계획 및 심사분석규정(안)	○ 규정명 변경(경영계획 및 심사분석규정 → 경영계획 및 사업관리규정) ○ 사업관리도입에 따른 단위사업관리와 리스크관리에 관한 내용 신설(사업관리=심사분석+단위사업관리+리스크관리) ○ 리스크관리(실무)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 신설	재정 전략팀
2	소송업무규정(안)	○ 파기환송·재심·재소사건의 착수금기준 문구변경(‘원심 착수금의 1/2 이하’ → ‘별표1에 따른 착수금의 1/2’) ○ 소송업무규정 중 소송위임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신설	행정 감사팀
3	인사규정(안)	○ 승진관련 기간산정시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않으나 강등처분에 대한 제약은 없어 관련 규정정비 ○ 채용비위 관련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집행이 종료 후 5년간 포상 제한	인사팀
4	인사규정 시행내규(안)	○ 적성(인성)검사를 인성검사로 대체, 직무능력검사를 필기시험에 포함 ○ 면접평가사항을 사장이 정하며, 면접반영비율 상향(40%→50%) ○ 언어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마련 ○ 임용인사 관련 부당개입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및 입찰 비리 관련자 처벌강화	인사팀

5. 의결방법 : 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

(※입안부서의 장인 위원은 해당사규에 대한 심의 및 의결에서 제외)

붙임 1. 심의안(2015-8차)

2. 수정입안내역
3. 사규심의위원명단(제2015-8차). 끝.

팀 원 **김채원** 법무팀장 **강기언** 경영지원처장 **김광석** 기획경영본부장 ^{12/22}**김우진**

협조자

시행 법무팀-4244 (2015.12.22) 접수 ()
방참번호 본부장 방참 제468호
우 138-201 /
전화 3410-7128 전송 3410-7131 / cw0131@i-sh.co.kr / 공개